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9592(본소), 2021나209608(반소) 판결
[공사대금 · 대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9592(본소), 2021나209608(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가평군법원 2021. 4. 29 선고 2019가소1168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희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1. 12. 2.

판결 선고 2021. 12. 1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21. 4. 29. 선고 2019가소11680(본소),
2020가소1061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23.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경기 양평군 C 외 1필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개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하수(온천) 개발용량은 일일(24시간) 100톤으로 한다.
 2. 지하수개발대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3. 공사금액 지불방법
 - *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 양수기 설치 전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 양수기 설치 후 수량이 확보되면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 계획물량이 부족하면 지하수 시공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시공비: 양정실, 양수기, 신고 및 준공,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 계획물량의 80% 이상이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
 - * 무상 A/S는 1년으로 한다.

2)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하수개발에 착수하여 양수기를 설치하고 계획물량을 충족하는 지하수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기 설치 전·후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여 일 100톤의 수량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경까지 별지 지적도 표시 ①, ④번 시추공을 새롭게 굴착하여 양수기를 설치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별지 지적도 표시 ②, ③번 시추공에도 양수기를 재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기 설치 전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지만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늦어도 원고가 별지 지적도 표시 ① 내지 ④번 시추공에 양수기를 설치 내지 재설치한 2016. 2.경1) 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이 사건 소는 2016. 2.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2. 27.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수십여 차례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를 방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D은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마다 '피고가 입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서를 사우나에 놓고 가라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묵시적으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2. 27.은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2019. 2.경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이기 때문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하여도 최고를 통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가) 2017. 3. 13.자 공사대금 청구서(갑 제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그 청구서를 교부받았는지, 이를 교부받으면서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 E,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2, 3)에 따르면 원고가 2016년 여름부터 2020년 초까지 E, F과 함께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우나를 방문하였다는 것만 알 수 있고,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김천수

판사안성민

별지

- 1) 2020. 12.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를 완료한 2016.
- 2.경부터 2018. 1.경까지 단 한 번도 양평군에 급수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